

붙임 1.

부 의 안

1. 제안부서 : 건설안전사업본부 건설사업처 건설사업부

2. 제안근거

-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운영기준(2016.02) 4. 운영절차 / 4-1 설계변경심사위원회 / 가. 심사·의결대상

3. 제안사유

- 오금공공주택지구 1,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중 작은도서관 인테리어공사 설계 변경 실정보고에 따른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.
 - 요청금액 (254,820천원) : 추정 증가금액이 건축공종 계약금액의 0.5%(431,430천원)와 7,000만원 중 작은 값 이상이므로 설계변경 심사 대상

4. 심사 · 의결 요구사항

- 설계변경 사유 (타당성) :
 - 우리공사 주민공동시설(작은도서관) 설계기준 반영
- 인테리어 공사비

구 분	견적가	적용 낙찰률
작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비	3개 업체 견적 받아 최저가 선정	87.499% (협의낙찰률)

※ 적용낙찰률

-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 사항으로 (100+계약낙찰율)/2 인 87.499% 적용함.

122081493281665

2017년 4월 27일

제안자 정인준 